

의안번호	제710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
- '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'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
- 위 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-2 일원
- 위탁기간 : 협약일부터 3년간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수탁기관 :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, 단체 등
- 사업비 : 없음(시설임대료, 관리비 등 수익금으로 운영)
- 시설규모
 - 면 적 : 부지면적 3,830.3㎡, 연면적 3,640㎡(지하 1층/ 지상 4층)
 - 주요시설 : 창업기업·기업지원기관 입주공간, 공유사무실, 회의실 등
- 위탁사무내용
 -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창업활동 지원
 - 기업관련 회의, 세미나, 전시회 등
 -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
 - 센터내 임대시설물의 임대운영 및 관리
 - 시설 및 건물일체의 보존, 유지관리 등

-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 - 운영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기관으로의 위탁을 통해 운영초기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 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 -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 -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
 - 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(위탁기간)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

I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(위탁기간)

II 현황

- 시설명 :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
- 위치 :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-2번지
- 사업기간 : 2021년 ~ 2024년
- 규모 : 부지 3,830.3m², 연면적 3,640m²(지하1층, 지상4층)
- 사업비 : 148.3억원(국비 38.3, 특교세 15, 도비 95)
- 주요시설 : 창업기업·기업지원기관 입주공간, 공유사무실, 회의실 등
 - 입주공간 : 총 23호실(2층 9호실, 3층 7호실, 4층 7호실)
 - 기타시설 : 1층 공유사무실, 관리사무실, 회의실, 휴게음식점 등
 - 주차시설 : 52대

III 그 간 추진상황

- 2021. 4. 23. : 혁신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(한국산단공)
- 2021. 5. 27. : 혁신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
- 2022. 4. 11.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
- 2023. 5. 15. : 혁신지원센터 건립공사 착공
- 2024. 12.(예정) : 혁신지원센터 건립공사 준공

IV

위탁개요

- 위탁대상 :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(지하1층~지상4층)
- 위탁기간 : 협약일로부터 3년간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위탁비용 : 없음(시설임대료, 관리비 등 수익금으로 운영)
- 수탁기관 :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, 단체 등
- 위탁사무의 내용
 -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창업활동 지원
 - 기업관련 회의, 세미나, 전시회 등
 -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
 - 센터내 임대시설물의 임대운영 및 관리
 - 시설 및 건물일체의 보존, 유지관리 등

V

추진절차 및 계획

①추진계획	•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	'24. 9월
②의회동의	• 민간위탁 의회동의	'24. 10월
③수탁방법	• 수탁기관 공모 - (방 법) 공개모집 [공고7일이상, 도 홈페이지 공고] - (자 격)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, 단체 등	'24. 10월
④수탁심사	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- (구 성) 6~9명 정도 - (심 사) 수탁자 적격성, 위탁관리 능력, 사업계획 등 - (결 정) 심사를 통한 고득점자 선정	'24. 11월
⑤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24. 11월
⑥사무개시	• 위·수탁 사무개시	'25. 1월

VI

세부추진계획

1] 의회보고

- 동의시기 : '24. 10월 임시회 중
- 동의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 1항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] 수탁기관 모집공고

- 공고기간 : '24. 10월 중(7일 간)
- 공고방법 : 공개모집(도 홈페이지 공개)
- 선정방법 : 위탁관리 기관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고득점자 선정)
- 신청자격 : 각 항 모두 해당하는 자
 -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, 법인, 단체
 -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최근 5년 이내 법인 또는 대표자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
- 위탁조건
 - 관계법령·조례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 - 센터 시설의 운영·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
 - 수탁자는 위·수탁 시설을 운영·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
 - 위·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
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

- 개최시기 : '24. 11월 ※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준용
 - 구성인원 : 6~9명 이내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심사항목 : 수탁자 적격성, 위탁관리 능력, 위탁관리 계획 등
 - 계획설명 및 심사 : 신청기관 계획설명 및 질의·응답
 - 수탁자 선정 :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최고득점자 선정
 -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제안설명, 질의·응답,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등을 심사표에 따라 개별심사
 -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1인과 최저점수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계하여 나눈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(단체)을 수탁자로 선정
 - 1개 법인(단체)이 신청 시 재공고 추진(2개이상 신청시 심의)
 - 단, 추가 공모에도 1개 법인(단체)만이 신청할 경우, 그 법인(단체)을 대상으로 심의 진행하고, 2개 이상의 법인(단체)이 신청하였다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 결정 시 재공모
- ※ 1개 법인이 신청, 수탁기관 선정 평가 시 위원별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

④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시기 : '24. 11월
- 내 용 : 협약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개시

VII |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24. 10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: '24. 10월(7일간)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4. 11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4. 11월
- 개소 준비 및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5. 1월 ~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

제8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

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□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건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○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오창혁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 전문인력을 배치한 기업지원 관련 법인(단체)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의 수입(시설임대료, 관리비 등)이 발생하여, 별도의 위탁비 지원없이 운영이 가능함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기업활동 지원, 기술창업 활성화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지원센터 사업 전문화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된 "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"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
□ 검토결과 : 적정

-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립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-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운영체계 조기 정착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과 업종 고도화 촉진, 연구개발, 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

⇒ **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,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**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4. 10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: '24. 10월(7일간)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4. 11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4. 11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5. 1월